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 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제1항)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한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3년 연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 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 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 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 시 표시등에는 전광류를 사용하 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 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 다)를 <u>2024년 6월 30일까지</u> 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 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 ----- ----- ----- ----- ----- ----- ----- ----- ---- <u>2027년 6월 30일</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연 락 처	(044) 205 - 3544